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소영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4월 06일

발 의 자: 소영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유만희, 이성배,
이효진, 최유희, 홍국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, 서울특별시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과학기술 인식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과학기술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'과학기술상'을 신설함(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).
- 나.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방법 및 시기에 '과학기술상'을 신설함(안 제4조제1항제12호 신설).
- 다. 시상종류별 시상인원에 '과학기술상' 6명(대상 1, 최우수상 2, 우수상 3)을 신설함(별표 1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: 별첨.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

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: 4월 21일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별표 1 】

시상종류별 시상인원

(단위 : 명)

종류별	시상인원			
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
계	258	14	69	175
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
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
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
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	94	3	19	72
서울특별시청년상	20	1	3	16
서울특별시성평등상	6	1	2	3
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	6	1	2	3
서울특별시건축상	31	1	5	25
서울특별시건설상	16	1	5	10
서울특별시안전상	7	1	2	4
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	6	1	2	3

※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'대상'선정 가능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시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서울특별시시민상(이하 “상”이라 한다)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,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[별표 1] 시상종류별 시상인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상종류별 시상인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종류별</th> <th colspan="4">시상인원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대상</th> <th>최우수상</th> <th>우수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252</td> <td>13</td> <td>67</td> <td>172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봉사상</td> <td>21</td> <td>1</td> <td>5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문화상</td> <td>14</td> <td>-</td> <td>14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환경상</td> <td>21</td> <td>1</td> <td>5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복지상</td> <td>16</td> <td>2</td> <td>5</td> <td>9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>94</td> <td>3</td> <td>19</td> <td>7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별	시상인원			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계	252	13	67	172	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	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	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	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	서울특별시	94	3	19	72	<p>제2조(시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</u></p> <p>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: 4월 21일</u></p> <p>[별표 1] 시상종류별 시상인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상종류별 시상인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종류별</th> <th colspan="4">시상인원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대상</th> <th>최우수상</th> <th>우수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258</td> <td>14</td> <td>69</td> <td>175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봉사상</td> <td>21</td> <td>1</td> <td>5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문화상</td> <td>14</td> <td>-</td> <td>14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환경상</td> <td>21</td> <td>1</td> <td>5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복지상</td> <td>16</td> <td>2</td> <td>5</td> <td>9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>94</td> <td>3</td> <td>19</td> <td>7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별	시상인원			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계	258	14	69	175	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	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	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	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	서울특별시	94	3	19	72
종류별		시상인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252	13	67	17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	94	3	19	7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류별	시상인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대상	최우수상	우수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258	14	69	1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봉사상	21	1	5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문화상	14	-	1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환경상	21	1	5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복지상	16	2	5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	94	3	19	7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어린이및청소년상				
서울특별시청년상	20	1	3	16
서울특별시성평등상	6	1	2	3
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	6	1	2	3
서울특별시건축상	31	1	5	25
서울특별시건설상	16	1	5	10
서울특별시안전상	7	1	2	4

※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'대상'선정 가능.

어린이및청소년상				
서울특별시청년상	20	1	3	16
서울특별시성평등상	6	1	2	3
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	6	1	2	3
서울특별시건축상	31	1	5	25
서울특별시건설상	16	1	5	10
서울특별시안전상	7	1	2	4
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	6	1	2	3

※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'대상'선정 가능.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2조 (시상의 종류 및 인원) 제1항제12호	○	[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]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선발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시상대상자에게 상패·메달 수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례 내용 및 유사 위원회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을 추계함 ⇒ 총 36,000천원 소요예상(연평균 7,200천원소요)
2	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	×	[재정소요 영향 미미]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에 따른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시상 횟수 및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시상 관련 비용(안 제2조제1항제12호)

나. 전제

임의규정이나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

- (공적심사위원회) 서울시 유사 위원회 운영 사례 등 활용
 - (위원구성) 위원구성은 15인을 가정(공무원 1인 + 시의원 2인 + 민간위원 12명)¹⁾²⁾
 - (심사횟수) 연 2회(1차 서면심사, 2차 대면심사) 실시 가정
 - (소요항목) 참석수당 1인 200,000원, 심사수당 1인 100,000원, 시상식 비용 1,200,000원, 상패 및 메달 제작비 1인당 각 150,000원 전제
- (발생기간) 2027년부터 비용 발생, 매년 소요, 추계기간(2027~2031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
- (미 고 려)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(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),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

1)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」 제7조(공적심사위원회)제3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1명으로,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2명으로 한다.

1. 관계 공무원
2. 시상종류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
3. 시상종류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2)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(수당)제2항제2호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수당 제외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7년~2031년)

라. 방법

- (자체추계)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비 및 유사 위원회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총 36,000천원(연평균 7,200천원 × 5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위원회 운영 및 시상 관련 비용(안제외)	7,200	7,200	7,200	7,200	7,200	36,000
	소계(a)	7,200	7,200	7,200	7,200	7,200	36,0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7,200	7,200	7,200	7,200	7,200	36,000

4. 덧붙이는 의견

- [추계액 성격] 예시적·제한적 금액

- 입법취지를 고려 시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³⁾이므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단, 집행 계획 등이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사례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 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 추계하였음

- [추계액 활용유의] 대략적 규모 파악용 자료로 활용 권장

-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민간위원 수, 위원구성, 회의 개최 주기, 시상 방법 등(다양한 지출결정요인)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3) [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]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,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시상 관련 비용(안 제2조제1항제12호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총 36,000천원(연평균 7,200천원 × 5년)

나. 연도별 소요비용 = ①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+ ②업무추진비 + ③시상식 비용 + ④상패 및 메달 제작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위원회 운영비용		7,200	7,200	7,200	7,200	7,200	36,000

- ①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= 2,400천원
= (200천원⁴) + 100천원⁵) × 12명⁶
- ② 업무추진경비 = 1,800천원
= 30천원⁷) × 15명
- ③ 시상식 개최 비용 = 1,200천원⁸)
- ④ 상패 및 메달 제작비 = 1,800천원
= 300천원⁹) × 6명

4)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 1. 위원회 참석수당

구분	단위	단가	비고
위원회	일당	기본료 : 150,000원 초과 : 50,000원	-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-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-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

5)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

구분	실적 기준	지급액
자문수당	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	최초 1시간 10만원
	T/F 자문 역할 수행자	초과 매시간 10만원
	E-mail, 서면 자문 요청 시	1회당 10만원

- 6)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(수당)제2항에 따라 공무원(당연직 등),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12명에게 지급
- 7)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및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
⇒ 최근 50천원으로 변경(2024. 8. 27.개정)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
- 8) 시상 인원이 동일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시상계획 소요 예산을 참고하여 산출함

사무관리비	○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등 84,000,000원	=	84,000천원
	○ 교통특별대책 홍보 100,000,000원	=	100,000천원
	○ 교통문화상 시상식 12,200,000원	=	12,200천원

출처 : 2026년 교통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예산설명서

9) 서울시 유사 사업 상패 소요 예산을 참고하여 산출함